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 및 수탁기관(제37조제4항 관련)

구분	위탁 대상 기관	수탁기관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